

형사 사법 절차 안내



NATHAN J. HOCHMAN

지방 검사

주요 법률 용어

무죄 판결 (Acquittal): 판사 또는 배심원이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피고인이 판사 앞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통지받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하는 법정 절차.

최종 변론 (Closing Argument): 재판에서 모든 증언과 증거 제출이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이 사건을 요약해 최종적으로 진술하는 것.

고소장 / 기소장 (Complaint): 검사가 한 명 이상의 피고인이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문서.

기일 연기 (Continuance): 판사가 여러 사유로 재판 절차를 연기하는 것.

유죄 판결 (Conviction):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 판사 또는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거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항변하지 않음’(No contest)으로 답변할 때 발생한다.

중범죄 (Felony):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벌금, 직위 박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대배심 (Grand Jury):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기소장 (Indictment)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2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경범죄 (Misdemeanor): :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이나 약 \$1,00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신청 (Motion): 재판에서 판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

개시 진술 (Opening Statement): 증언이나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자신들이 제시할 증거와 사건의 쟁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진술.

답변 / 항변 (Plea):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 피고인은 무죄, 유죄, 또는 항변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

예비 심리 (Preliminary Hearing): 중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법정 절차. 판사는 증거가 충분한지,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무죄 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형법의 원칙.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증거 기준. 모든 증거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토한 뒤에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의심이 남은 상태.

배상금 (Restitution):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정적 손실(예: 도난 재산, 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선고 (Sentencing): 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벌을 정하는 법정 절차. 징역, 구금, 보호관찰, 기타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환장 (Subpoena):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증언 (Testimony):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이 하는 진술 또는 답변. 증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받는다:

직접 심문 (Direct Examination) 증인을 부른 측(검사 또는 변호인)이 처음으로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

반대 심문 (Cross-Examination) 증인을 부르지 않은 반대 측 변호인이 증언을 명확히 하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질문하는 것.

평결 (Verdict):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가 재판을 무효(Mistrial)로 선언하고, 피고인은 새로운 배심원단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절차

법 집행 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면 체포를 합니다. 그러나 체포는 형사 사법 절차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체포 후, 검사는 혐의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 고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며, 경우에 따라 검사는 대배심에 증거를 검토하게 하여 기소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변호인의 대리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가 실제 사건을 기소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판사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중범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예비 심리에서 판사에게 제시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사는 징역, 구금, 보호관찰 또는 기타 형벌 조건을 선고합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법정 방청

피해자, 가족, 친구 및 일반 대중은 법정 절차에 참석하여 법적 논쟁, 증언 및 법원의 판결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예절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단정하게 복장하십시오.
-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배지, 버튼, 또는 기타 물품을 착용하거나 전시하지 마십시오.
- 음료, 음식, 껌은 법정 밖에 두십시오.
- 보안관이나 판사의 지시에 따라 기립하십시오.
- 법정 내에서는 대화를 삼가하십시오.
- 배심원 근처에서 말하거나, 배심원과 대화 접촉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 평결이 낭독될 때 언어적 항의나 방해되는 반응을 삼가하십시오.

판사는 소란을 일으키거나 법정 예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법정에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그 가족 및 친구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과의 대립이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법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 위협, 또는 방해하려는 행동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에게 알리십시오.

형사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그래픽 사진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은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법정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스캔하여 모든 팸플릿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에서 증언하기

검사 또는 변호사의 요청으로 증언대에 선 증인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 질문을 주의 깊게 들은 후, 물어본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질문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만 답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 질문이 혼란스럽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을 다시 말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모르는 경우에는 추측하여 답하지 마십시오.
- 검사와 변호사 모두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답변하십시오.
- 법정에 서기 전에, 경찰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과거 진술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 변호사가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사가 답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 단정한 복장을 하십시오.

피해자 지원

지방검찰청 산하 피해자 지원국(Bureau of Victim Services)은 카운티 내 각 법원과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부상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 트라우마 인지 기반

정신건강 상담 연계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자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기 개입 서비스와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명령 신청 지원, 법정 절차 안내, 긴급 피난처·식사·의복 마련, 캘리포니아 범죄피해자 보상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보상 신청 지원 등을 돕습니다.

폭력 범죄나 폭력 위협의 피해자 중 경찰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임금 손실, 이주 비용, 의료비, 상담비 등 범죄와 관련된 적격 손실 및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담당자는 여러 언어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이나 법적 체류 요건은 없습니다.

피해자 영향 진술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범죄가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진술서를 읽을 수 있으며, 녹음된 진술이나 서면 진술을 판사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

범죄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 금액이 표시된 자료 등을 검사, 보호관찰국 직원, 그리고 피해자 지원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판사가 명령할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유죄 판결자는 교도소 계좌와 임금에서 배상금이 공제됩니다. 만약 중범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관찰국이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을 징수합니다.

배상 명령 집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배상 강화 프로그램(Restitution Enhancement Progra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00) 380-3811.

가석방 통지

피해자는 모든 가석방 심리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심사에 참고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수형인의 신분 변동—예: 형기 만료 후 석방, 도주, 사망—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석방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권리와 피고인의 가석방 심리 일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통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 **피해자 서비스 요청서(Form 1707)**를 작성해야 하며, 항상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서비스국(Office of Victim and Survivor Rights and Services)에 최신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을 받으려면 (877) 256-6877로 전화하시거나 cdcr.ca.gov/victim_service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양식 작성과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

피해자 지원국

da.lacounty.gov/victims

(800) 380-3811